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학생회칙

(2022. 12. 09 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심리학과 학생총회

제4장 심리학과 운영위원회

제5장 심리학과 집행국

제6장 심리학과 학생회장단

제7장 심리학과 소학회

제8장 재정

제9장 선거

제10장 비상대책위원회

제11장 회칙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심리학과 학생회(이하는 '본회'라 칭함)라고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심리학과와 심리학과 학생들의 원활한 대학 생활과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설치) 본회는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내에 둔다.

제 4조 (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자치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심리학과 학생총회, 심리학과 운영위원회, 심리학과 학생회 및 소학회로 구성한다.

제 2장 회원

제 5조 (자격)

1. 본 회의 정회원은 본교 사회과학부로, 심리학과로 입학한 재학생으로 한다.
2. 휴학한 자와 복수전공자는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3. 정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권리를 박탈 할 수 있다.

제 6조 (권리 및 의무)

1. 본 회의 회원으로 인정된 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① 정회원은 본 회의 의사 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정회원은 본 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③ 정회원은 본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④ 준회원은 본 회의 의사 결정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원으로 인정된 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①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 ② 정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한하여 재정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 3장 심리학과 학생총회

제 7조 (지위) 학생총회(이하 '총회'라 칭함)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 8조 (구성)

1. 총회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2. 본회의 회칙 제 5조에 의한 준회원 또는 비회원은 필요시 학생총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제 9조 (권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 보고 (학생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2. 본회에 관련된 중요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
3. 본 회의 사업에 대한 예산승인 및 결산보고
4.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의결

5.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하 '회장단'이라 칭함)의 탄핵 발의
 - 가. 발의 탄핵발의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1/2 이상의 연서, 또는 본 회 정회원 7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나. 의결 탄핵발의는 본 회 정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운영위원회, 집행부에 대한 탄핵 발의
7. 신설 소학회의 인준
8. 집행국 임원 심의 및 인준
9. 기타 본 회의 일상적인 운영과 관련한 사안의 결정

제 10조 (의장과 부의장)

1.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1인씩 둔다.
2.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본 회의 회장과 부회장이 겸임한다.

제 11조 (소집 및 공고시기)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 학기의 시작 이후 한 달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소집 시기를 늦출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거나 정회원 1/3 이상의 연서가 있을 때,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본회 및 본교의 위기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의장이 심리학과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공고시일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정기총회는 총회 7일전에, 임시총회는 총회 5일전에 공고한다.
6. 심리학전공 커뮤니티 및 울곡관에 대자보를 통한 서면공고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제 12조(개회 및 의결)

1. 정기학생총회는 전 회원의 1/5이상 출석,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시학생총회는 전 회원의 1/10이상 출석,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출석인원 미달로 개회하지 못한 경우 안건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를 할 수 있다.

제 13조(총투표)

1. 최고 의결수단으로서 심리학전공 학생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발의하여 심리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발의된 안건을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학생총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심리학과 운영위원회

제 14조 (지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칭함)는 심리학과 학생회의 상임 의결기구이다.

제 15조 (구성)

1. 운영위는 심리학과 학생회 회장, 부학생회장, 각 소학회 회장 그리고 당해년도 학번대표로 구성된다. (단 운영위원 중 해당 구성원이 없다면 나머지의 구성원으로 운영한다.)
2. 각 운영위원은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각 단위의 부회장(부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때 부회장(부대표)은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단, 선거관리위원의 권한은 위임 할 수 없다.)
3. 본 회의 회원에 한하여 누구나 운영위에 참관할 권리를 가진다.(단, 발언권은 위원장의 허락을 통하여 가진다.)

제 16조 (업무 및 권한) 운영위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본 회의 활동에 기본방향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
2. 본 회의 사업에 대한 예산, 결산의 발의 및 집행
3. 총회 및 운영위 소집요구권
4.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5.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발의
6. 집행부 업무 진행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 검토, 조정을 건의
7. 본회가 관리하는 공간을 검토, 심의 및 조정
8. 기타 본 회의 일상적인 운영과 관련한 사안의 결정

제 17조 (의장과 부의장)

1. 운영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장과 부의장을 1인씩 둔다.
2. 운영위의 의장과 부의장은 본 회의 회장과 부학생회장이 각각 겸임한다.
3. 본 회의 학생회장의 부재 시 부학생회장이 대행한다.

제 18조 (소집)

1. 운영위는 정기운영위와 임시운영위로 나눈다.
2. 정기 운영위는 매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경고를 받게 된다. (경고를 3번 받게 되면, 해당 소학회를 당해 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 제명한다.)**
3. 임시 운영위는 심리학과 학생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의장은 운영위를 소집해야 한다.

제 19조 (개회 및 의결) 운영위는 재적인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심리학과 집행국

제 20조 (지위) 집행국은 심리학과 학생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21조 (구성)

1. 집행국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위원장 및 각 국의 국장, 차장, 국원으로 구성한다. (단, 학생회장은 필요시 집행국을 증설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국에 한한다.)
2.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각 국의 국장은 차장과 국원을 둘 수 있다
3. 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을 허용한다.
4.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집행국 이외의 기획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 22조 (업무 및 권한) 본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학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6장 심리학과 학생회장단

제 23조 (지위) 심리학과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 그리

고 집행부의 장이 되며,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24조 (임기)

1.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임제로 한다.
2. 차기 회장은 전 학생회로부터 사임을 이월 받을 권한을 갖는다.

제 25조 (학생회장)

1. 대외활동에 있어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사업을 총괄한다.
2.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국을 소집하여 이를 주관한다.
3.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국의 증설 및 폐지권(단, 2개부에 한함)을 갖는다.
4. 기타 심리학과 학생회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5. 본회의 발전과 회원이 단합을 도모한다.
6. 본회의 모든 의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단지 가부동수일 때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집행국의 관련한 모든 활동은 학생회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 (즉, 이는 회장단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8. 심리학과 학생회장 휴학 시, 운영위는 재적인원 1/2이상 출석과 참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사퇴시킬 수 있다.

제 26조 (부학생회장)

1. 집행국의 지휘, 조정, 통제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 학생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모든 권한을 위임 받는다.

제 7장 심리학과 소학회

제 27조 (지위) 심리학과 소학회는 본회 내부에 두며 전공에 소속된 자치기구로 학회 운영에 있어 다른 자치기구의 간섭을 받지 않은 권리를 가진다.

제 28조 (기능)

1. 전공과 관련된 학술적인 분야와 다양한 비학술적인 분야를 개발, 증진시키며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2. 소학회의 특성에 맞는 행사를 기획·실시한다.
3. 소학회의 회칙을 자체적으로 제정 및 개정한다.

제 29조 (업무 및 권한)

1. 심리학과 회원은 소학회 세미나의 요일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소학회 가입을 권장한다.
2. 소학회 회장은 소학회 구성원을 대표하여 사회과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의 위원 및 심리학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3. 사회과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와 심리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소학회 사업 전반의 검토, 심의, 조정에 발언권을 가진다.
4. 미리배움터와 새로배움터에서 참여권과 홍보권을 보장한다.
5. 소학회에 관련된 모든 권한은 인준 소학회로 제한하며, 제명된 소학회의 경우 제외된다.

제 30조 (구성원 및 성격)

1. 심리학과 소학회의 활동에 관심이 있어야 하며, 임원직은 제 1전공이 심리학과인 학생이어야 한다. 그리고 분파 또는 파벌과 성별로 그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2. 소학회 활동은 심리학과와 문화 창달과 건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퇴폐 . 상업적 목적 및 성격이 있을 경우 소학회 등록을 규제한다.
3. 소학회 활동에 있어 활동이 현저히 저조할시 소학회의 권리를 규제한다.
4. 소학회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각 소학회 회칙에 따르고 만일 소학회 회칙이 없을시 전공 회칙에 따르며 회원들의 활동이 자유로워야 한다.

제 31조 (의무)

1. 심리학과 내의 인준된 각 소학회장은 소학회 구성원을 대표하여 심리학과 운영위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단, 준인준 소학회의 경우 참관인으로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2. 각 소학회는 1년 동안 1회 이상의 대.내외적 행사(학술제, 정기공연 등)를 해야 한다.
3. 심리학과 사업에 소학회 인원 20%이상 이 참석하지 않을 시, 주의를 받게 되며, 주의 2 번시 경고 1회로 한다. (경고를 3번 받게 되면, 해당 소학회를 1년 동안 제명한다.)

제 32조 (인준절차)

1. 본 회의 소학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명시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10인 이상의 활동 중인 정회원
 - 나. 지도교수
 - 다. 다음연도의 활동목표 및 계획
2. 운영위에 제출된 소학회 등록 안건을 1/2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1/2의 결의로 통과된다. 통과시 해당 단체는 비인준 소학회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3. 제31조의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할 경우 해당 비인준 소학회는 준인준 소학회로 승격을 심리학전공 학생총회에 건의할 수 있다.
4. 학생총회에 제출된 소학회 승격 안건을 1/2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1/2의 결의로 통과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단체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심리학과 인준 소학회로 인정되며 심리학과 소학회로서의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제 33조 (제명) 본 회칙에 의해 소학회가 제명되었을 경우, 제명된 소학회가 다음 연도에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제 32조 1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면 인준 소학회로서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소학회는 비인준 소학회로 강등된다.

제 34조 (휴면)

1. 소학회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학회는 각 소학회의 자체 회칙에 따라 휴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휴면을 한 소학회는 당해 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 소학회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상실한다.
2. 휴면이 적용되었던 소학회가 다음 연도에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제 32조 1항의 조건을 갖춘 뒤, 학기 초에 총회를 열어 심리학과 학생회장의 입회하에 소학회의 활동 재개를 공표해야 한다.

제 8장 재정

제 35조 (재원)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한 학생회비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학교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 기타 운영위가 인정한 부대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2.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은 공고한다.

제 36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년(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으로 한다. 즉, 학생회의 출범부터 다음 대 학생회 이월까지로 한다.

제 37조 (학생회비)

1. 학생회비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원활한 학습활동의 여건조성을 위하여 사용 되어야 한다.
2. 납부 의무는 신규가입 시 1회에 한하며, 회비 납입은 정회원의 자격요건이 된다.
3. 학생회비의 납부 절차와 액수는 운영위가 결정한다.

제 38조 (예산과 결산)

1.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2. 심리학과 학생회는 운영위 및 총회에서 예·결산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예산의 집행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및 사무국장의 결재를 거친다.
4.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제 39조 (회계 감사)

1. 심리학과 학생회 및 소학회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회비 사용에 대한 회계를 정리한다.
2. 심리학과 학생회와 소학회는 회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서 각각 중앙감사위원회와 심리학과 학생회에 회계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3. 회계 감사는 해당 연도에 2분기 이상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분기별 시기는 운영위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4. 소학회 회계 감사는 당 해 학생회 사무국을 통해 진행되며, 이상이 있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소학회에 추가 자료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회계 감사가 완료된 후에는 일반 학우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심리학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제 9장 선거

제 40조 (선거시기) 심리학과 학생회장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선거는 매년 11월에 실시하며 일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제 41조 (선거권) 선거권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 당해 학기의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 42조 (피선거권)

1. 선거권을 갖고 학업에 충실하며 학생자치활동에 열성을 갖고 통솔력이 있는 자
2. 정후보는 2개 학기 이상, 부후보는 2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누계평점 2.0이상인 자
3. 본회의 구성원 20% 이상의 후보추천서명을 받은 자

제 43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이하는 '선관위'라 칭함)는 **본 년도의 운영위원회로 구성되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목표로 그에 관한 선관위와 선거운동 본부의 모든 활동에 책임을 진다.
2. 선관위의 위원장은 본 년도의 심리학과 학생회장이 된다.
3. 선거기준을 정립하고 그를 위반하는 후보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4. 선관위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해체한다.

제 44조 (선거원칙) 본회는 선거 4원칙(보통, 직접, 비밀, 평등)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 45조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학생회장(정), 부학생회장(부) 후보는 하나의 선거본부를 구성하며 회원은 선거본부를 투표 대상으로 한다.
2. 입후보자는 선관위가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3.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등록한다.

- 가.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선관위 소정양식) 1부
 - 나. 약력 및 입후보 소견서 (선관위 소정양식) 1부
 - 다. 제 42조 3항에 해당하는 서명 날인한 추천서
 - 라. 재학증명서
 - 마. 선거규약 이행 및 공정선거 서약서 (선관위 소정양식) 1부
 - 바. 증명사진 각 2매
 - 사. 성적증명서 각 1통
4. 선거운동은 공명정대하게 실시하고, 기간은 선관위가 지정한 후보자 유세기간에 실시한다.

제 46조 (선출)

- 1. 단일후보일 경우,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여에 참여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2. 경선일 경우,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여에 다수 투표자로 선출한다.
- 3.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한다.

제 47조 (보궐선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부재하거나 탄핵결의를 받아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잔여 임기가 60일을 초과할 경우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방학은 제외)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48조 (선거규약)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회대 학생회의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0장 비상대책위원회

제 49조 (명칭 및 지위) 학생회 건설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다. 다음 대 학생회가 들어설 때까지 학생회를 대신하는 체계를 지칭하거나 **본 년도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부재시의 체계를 지칭한다.**

제 50조 (구성) 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운영위원들과 집행국원을 소집하여 구성한다.

제 51조 (대표)

- 1.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이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이라 칭함)는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가운데 심리학과 운영위원회 또는 집행국 1인으로 구성된다.
- 2. 비상대책위원회의 부대표(이하는 '비상대책부위원장'이라 칭함)는 비상대책위원장이 호선할 수 있다.

제 52조 (지위 및 권한) 학생회의 공백 기간에 학생회장단과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제 11장 회칙개정

제 53조 (발의) 본회의 개정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심리학전공 학생회장의 발의
- 2. 운영위원 2/3 이상의 발의
- 3. 정회원 25%이상의 발의

제 54조 (상정) 회칙 개정 발의 시 심리학전공 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1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 공청회 등의 기타 여론 수렴을 통하여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제 55조 (투표 및 개정) 개정된 회칙은 제12조에 의거하여 정회원들에게 투표를 실시하며 의결되었을 경우, 즉시 공포하고 3일 이상 공고한다.

부칙

제 1조 (발행) 본 회칙은 심리학과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심리학과 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을 발하고 이전의 모든 학생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제 2조 (준칙)

1. 본회의 회칙은 다른 단대급 이상 회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은 통상관례 및 일반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른다.

제 3조 (시행) 본 회칙은 2012년 9월 7일 부터 공포한다.

부칙

제 1조 (발행) 본 회칙은 심리학과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심리학과 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을 발하고 이전의 모든 학생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제 2조 (준칙)

1. 본회의 회칙은 다른 단대급 이상 회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은 통상관례 및 일반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른다.

제 3조 (시행) 본 회칙은 2013년 3월 8일 부터 공포한다.

제 4조 (변경) 학과제 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을 시행한다. (심리학전공 → 심리학과)

부칙

제 1조 (발행) 본 회칙은 심리학과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심리학과 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을 발하고 이전의 모든 학생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제 2조 (준칙)

1. 본회의 회칙은 다른 단대급 이상 회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은 통상관례 및 일반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른다.

제 3조 (시행) 본 회칙은 2014년 3월 7일 부터 공포한다.

제 4조 (변경) 학과제 변경에 따른 심리학과 학생 구성원의 범위 변경을 시행한다. (제 1전공을 심리학으로 선택한 재학생 -> + 심리학과로 입학한 재학생)
집행부 국 개수제한 폐지 및 집행국 구성 구체화를 시행한다.
소학회 가입권장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소학회 연석회의의 명칭 변경을 시행한다. (소학회 연석회의->소학회 대표자 회의)

준인준 소학회의 심리과 운영위원회 참석 의무화를 시행한다.

부칙

제 1조 (발행) 본 회칙은 심리학과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심리학과 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을 발하고 이전의 모든 학생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제 2조 (준칙)

1. 본회의 회칙은 다른 단대급 이상 회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은 통상관례 및 일반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른다.

제 3조 (시행) 본 회칙은 2015년 9월 18일 부터 공포한다.

제 4조 (변경) 다양한 기회 보장을 위한 피선거권 자격 변경을 시행한다. (정후보는 4개 학기 이상 → 정후보는 2개 학기 이상)

회계 감사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감사 조항을 추가한다. (제 37조 (회계 감사))

1. 심리학과 학생회 및 소학회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회비 사용에 대한 회계를 정리한다.
2. 심리학과 학생회 및 소학회는 회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의를 통한 회계 감사를 받아야한다.
3. 회계 감사는 해당 연도에 2분기 이상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분기별 시기는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4. 회계 감사 시의 구성원은 심리학과 학생회 회장단과 각 소학회 회장단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소학회 회장단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에만 총무가 소학회 대표 1인으로서 참석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 (발행) 본 회칙은 심리학과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심리학과 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을 발하고 이전의 모든 학생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제 2조 (준칙)

1. 본회의 회칙은 다른 단대급 이상 회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은 통상관례 및 일반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른다.

제 3조 (시행) 본 회칙은 2016년 9월 2일 부터 공포한다.

제 4조 (변경) 정기 운영위는 매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경고를 받게 된다. (경고를 3번 받게 되면, 해당 소학회를 당해 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 제명한다.)

제 33조 (제명) 본 회칙에 의해 소학회가 제명되었을 경우, 제명된 소학회가 다음 연도에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제 32조 1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면 인준 소학회로서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위의 조건을 갖

추지 못하면 그 소학회는 비인준 소학회로 강등된다.

제 34조 (휴면)

1. 소학회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학회는 각 소학회의 자체 회칙에 따라 휴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휴면을 한 소학회는 당해 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 소학회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상실한다.
2. 휴면이 적용되었던 소학회가 다음 연도에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제 32조 1항의 조건을 갖춘 뒤, 학기 초에 총회를 열어 심리학과 학생회장의 입회 하에 소학회의 활동 재개를 공표해야 한다.

부칙

제 1조 (발행) 본 회칙은 심리학과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심리학과 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을 발하고 이전의 모든 학생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제 2조 (준칙)

1. 본회의 회칙은 다른 단대급 이상 회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은 통상관례 및 일반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른다.

제 3조 (시행) 본 회칙은 2017년 12월 1일 부터 공포한다.

제 4조 (변경) 제 51조 (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이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이라 칭함)는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가운데 심리학과 운영위원회 또는 집행국 1인으로 구성된다. (변경 : 소학회 회장 → 심리학과 운영위원회)

부칙

제 1조 (발행) 본 회칙은 심리학과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심리학과 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을 발하고 이전의 모든 학생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제 2조 (준칙)

1. 본회의 회칙은 다른 단대급 이상 회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은 통상관례 및 일반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른다.

제 3조 (시행) 본 회칙은 2019년 3월 8일 부터 공포한다.

제 4조 (변경) 제 55조 (투표 및 개정) 개정된 회칙은 제12조에 의거하여 정회원들에게 투표를 실시하며 의결되었을 경우, 즉시 공포하고 3일 이상 공고한다.

1. 개정, 변경된 회칙 변경 이전의 회칙과 변경된 회칙 모두를 기록하며 학생회칙 하단의 부칙에 기록한다.
2. 삭제된 회칙은 삭제 내역 확인을 위해 학생회칙 하단의 부칙에 기록한다

부칙

제 1조 (발행) 본 회칙은 심리학과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심리학과 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을 발하고 이전의 모든 학생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제 2조 (준칙)

1. 본회의 회칙은 다른 단대급 이상 회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은 통상관례 및 일반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른다.

제 3조 (시행) 본 회칙은 2022년 12월 10일 부터 공포한다.

제 4조 (변경) 제 39조 (회계 감사)

2. 심리학과 학생회와 소학회는 회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서 각각 중앙감사위원회와 심리학과 학생회에 회계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4. 소학회 회계 감사는 당 해 학생회 사무국을 통해 진행되며, 이상이 있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소학회에 추가 자료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회계 감사가 완료된 후에는 일반 학우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심리학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